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입니다

Heritage

계승 · 활용 · 미래

문화재(문화재보호법)

유형문화재

기념물(사적지류)

민속문화재

기념물(명승, 천연기념물류)

무형문화재(전통공연, 전통기술 등)

국가유산 (국가유산기본법)

문화유산

- 유형문화유산
- **기념물**(사적지류)
- 민속문화유산

문화유산법



자연유산 (명승, 천연기념물류)

자연유산법

무형유산 (전통공연, 전통기술 등)

무형유산법

역사와 정신까지 포함한 유산 개념으로 확장

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'재(財)' 에서 과거 · 현재 ·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(遺産)으로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

유네스코 등 국제사회 기준과의 정합성 · 연계성 확보

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· 자연유산 · 무형유산으로 분류, 통칭 '국가유산'으로 분류체계 재정립

시대변화 · 미래가치를 반영한 정책범위의 확장

비지정유산 · 미래 잠재적 유산까지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, 보존관리를 위한 규제 중심에서 국가유산복지, 교육·홍보, 산업육성 등 활용 · 진흥정책 활성화

是類和利利的學人是不過利益。



